

【붙임1】

**분야별 소위원회 · 전문위원 및
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업무 안내**

분 야	업 무
<p align="center">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영비법」 제29조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 등 ▪ 등급분류 결정사항: 전체관람가, 12세이상관람가, 15세이상관람가, 청소년 관람불가, 제한상영가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2회(월, 수) 개최 ※ 1회당 2편 내외 등급분류, 필요시 증회 가능
<p align="center">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영비법」 제50조에 의한 국내·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 ▪ 등급분류 결정사항: 전체관람가, 12세이상관람가, 15세이상관람가, 청소년 관람불가, 제한관람가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3회 이상 개최(세부일정은 논의 후 결정) ※ 1회당 약 5시간 내외 소요, 필요시 증회 가능 ※ 부산 소재 위원회 청사와 서울 소재 위원회 교육지원 및 회의시설에서 동시 진행
<p align="center">광고물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영비법」 제29조에 의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, 제32조, 제66조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·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4회(월, 화, 목, 금) 개최 ※ 1회당 약 4시간 내외 소요, 필요시 증회 가능 ※ 서울 소재 위원회 교육지원 및 회의시설에서 진행
<p align="center">공연추천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공연법」 제6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8조 제2항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, 「공연법」 제5조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▪ 공연추천 결정사항: 외국인 공연자의 자질(가창력, 전문성 등)을 확인하여 공연추천 여부 결정,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1회 개최(세부일정은 논의 후 결정) ※ 1회당 약 4시간 내외 소요, 필요시 증회 가능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화 전문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영비법」 제29조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에 대한 사전검토 등 ▪ 회의 개최횟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5회 개최 ※ 1회당 3~4편 이상 사전검토, 필요시 증회 가능 ※ 오전 9시부터 사전검토 완료시까지 또는, 오후 1시부터 사전검토 완료시까지 회의참석이 가능하여야 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후관리 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직무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2조 제2호에 의한 영상물 등의 제작·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 ▪ 회의 개최횟수: 분기별 2~3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가능

- ※ 회의 개최횟수, 소요시간은 신청물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
- ※ 임기 중일지라도 성실성, 공정성, 객관성 등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나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해촉 될 수 있음
- ※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제3호에 따라 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함